

제25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6. 3. 11.

임실군의회의장

### 1. 개정이유

개정된 상위법령을 조례에 반영하여 규제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조례 적용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 나. 시장 점포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 다. 입주금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라. 사용료 및 공공요금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제16조)
- 마. 식품위생 및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제22조)
- 바. 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제 30조)
- 사. 별지 및 별표 서식 개정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협의 등
  - 1)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15. 12. 19 ~ '16. 1. 7)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2) 비용추계서 : 불입 (미첨부사유서)
  - 3) 관련법령 발췌문 : 불입

##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임실군이 개설한 정기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임실군에서 개설한 정기시장을 말한다.
2. "점포"란 시장 내에서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장 내 건물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명칭 등)**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은 별표 1과 같다.

#### 제2장 사용허가

**제4조(허가)** ① 시장 내 점포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시장명, 판매상품
3. 사용목적
4. 사용기간 및 영업시간

-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군수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③ 사용자가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조(사용자 선정)** 빈 점포에 대한 사용자 선정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접수하고, 접수한 신청자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6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따른 승계 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② 상속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승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사용갱신 요구권의 기간도 또한 같다.

**제7조(허가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 부터 6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이상 휴업한 경우.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허가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4.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양수한 경우
5. 이 조례에 따라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8조(청문)**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휴·폐업 및 주소변동신고)** 사용자는 점포사용을 포기하거나 허가기간 내 휴·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30일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주소 등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0조(입주금)** ① 제4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주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사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며, 장육의 위치, 건평, 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입주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금을 반환할 때에는 시장사용료의 체납 및 면탈 행위가 있는 경우 체납 또는 면탈된 사용료액을 공제하고 잔여금만을 반환한다.

**제11조(시설변경)**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개축 또는 그 밖에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변경 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군수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내 시설물 중 일부를 단체·법인·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장 사용료

**제13조(사용료)** ① 시장사용자는 별표 2의 요율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사용자는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액으로 계산하여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 ③ 사용료는 허가를 받는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선납입하여야 한다.
- ④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액으로 군수가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환급신청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 ⑤ 사용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는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선납으로 하여 전월말까지 이를 징수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시 마다 이를 징수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5조 (사용료 감면 및 면제)** ① 군수는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에서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빈 점포를 상인의 교육, 고객안내시설 등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장소로 활용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공공요금)** 시장관리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수수료 그 밖에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4장 위생·화재예방

**제17조(식품위생)** 시장 안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위생관리)** 군수는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 환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인들로 하여금 청소 또는 소독을 하도록 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취사제한)** 시장 내에서는 취사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위생법」규정에 따른 음식점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소방시설)** ① 군수는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소방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1조(방화관리자)** 시장의 방화관리자는 시장을 관할하는 읍·면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시장구역의 소방계획수립 및 화기취급 감독순찰  
 2. 시장 내 자위소방대 조직·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  
 3.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4. 화재발생시 소화·통보·피난 및 필요한 긴급조치

#### 제5장 지도·감독

**제22조(관리원)** 군수는 시장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관리원 임무)** 시장관리원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장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24조(야간경비)** 군수는 시설의 보호나 재물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야간경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주거금지)** 사용자는 시장시설물이나 부지를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점포의 배열)** 군수는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안의 업

종별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도로사용금지)** 사용자는 시장안의 도로상에서는 물건을 보관 또는 진열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가격의 표시 등)** 군수는 사용자에게 판매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과 원산지 표시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시장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장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시장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 취소가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배상시켜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임실군 공설시장 명칭, 위치, 개시일시표 (제3조 관련)

시장명	위 치	개 시 일	비 고
임실시장	임실읍 수정로	매월 1, 6, 11, 16, 21, 26	
관촌시장	관촌면 사선1길	매월 5, 10, 15, 20, 25, 30	
강진시장	강진면 호국로	매월 2, 7, 12, 17, 22, 27	
신평시장	신평면 석등슬치로	매월 3, 8, 13, 18, 23, 28	

[별표 2]

### 시장 사용료 요율표(제14조 관련)

구 분	기 준	사 용 료
1. 상설시장		
○ 장 옥	년 1㎡	○ 토지는 공시지가의 25/1,000 ○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의 25/1,000
○ 부 지	년 1㎡	○ 공시지가의 25/1,000 × 50/100
2. 정기시장		
○ 장 옥	년 1㎡	○ 토지는 공시지가의 25/1,000 × 80/100 ○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의 25/1,000 × 80/100
○ 부 지	년 1㎡	○ 공시지가의 25/1,000 × 80/100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전북임실002		
정책명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지역경제과	
	담당자명	전경숙	전화번호 063-640-240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1월 1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지역경제과)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시장 점포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다. 입주금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라. 사용료 및 공공요금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제17조) 마. 식품위생 및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제23조) 바. 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제 31조) 사. 별지 별표서식 개정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01월 13일			
<b>주민복지과장</b> (담당자/연락번호 : 박경숙/063-640-2123)			
지역경제과장 귀하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

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